Vol.35

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June 2021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부당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02 주요 내용

03 '21. 5월 WTO SPS 통보 통계

04 '21. 5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 화 | 044) 201-2080, 2081 | 팩스 | 044) 868-0449

Contents

Ⅰ. WTO SPS 통보 및 현황 03

Ⅱ. 주요 내용 04

WTO SPS 통보문

동물검역

[싱가포르] 실험실 및 동물원 전시 용도의 영장류와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 4

[일본] 육류 및 설육의 수입허용국가와 시설 개정 6

[태국] 동물 지육으로 분류되는 가공식품 목록 통보 6

식물검역

[대만] 가지속 및 고추속 식물 종자의 수입규제조치 개정 7

[미국, 캐나다] 아시아매미나방 규제지역에서 출항한 선박에 대한 특정위험기간 개정 8

[호주] 포도피어슨병균의 기주 식물 추가 관련 긴급조치 통보 9

식품안전

[브라질]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10

[유럽연합] 사료첨가제 L-발린(L-valine)의 사용승인 공고 11

[캐나다] 농약 4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정 12

WTO TBT 통보문

동물검역

[몽골] 육류 및 육류 제품 생산과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 제정안 13

[미국]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개정안 14

Ⅲ. '21.5월 WTO SPS 통보 통계 16

Ⅳ. '21.5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26

SPS *info* NEWS 집필진

| 검역정책과 연구위원 강신원 (유럽 지역)
연구위원 염윤아 (오세아니아 지역)
연구위원 이근필 (서반어권 지역)
연구위원 조은송 (아시아 지역)

| 관련질의메일 wtoagri@korea.kr

| 농업통상과 연구위원 이소영 (서남아·아랍권 지역)
| 동아시아FTA과 연구위원 김현정 (중국어권 지역)
| 수출진흥과 연구위원 황기선 (북미 지역)
| 식품산업정책과 연구위원 유요예 (아프리카 지역)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WTO SPS 협정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가간 교역의 부당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S 조치는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SPS 조치의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1. 5월말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170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위생(39건), 식물보호(33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보호(16건),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보호(14건)순 이었습니다.

* 하나의 WTO SPS 통보에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통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5월말 기준, WTO SPS 통보문 및 WTO TBT 통보문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WTO SPS 통보문

동물검역

01 [싱가포르]

실험실 및 동물원 전시 용도의 영장류와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

(G/SPS/N/SGP/70, G/SPS/N/SGP/71, ’21.5.28.)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NParks)와 동물 및 수의청(AVS)에서는 영장류와 조류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실험실 용도의 영장류 및 조류 수입위생조건 신구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
[제4편] 검역증명서	〈신 설〉 내용 추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살아있는 동물 운송 규정에 준하는 컨테이너로 운송하여야 함
	NParks/AVS에서 승인한 경우 이외에, 해당 동물은 황열병 백신 접종 이력이 없으며, 수출 전 30일 이내에 어떠한 백신도 접종하지 않아야 함	NParks/AVS에서 승인한 경우 이외에, 해당 동물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어떠한 백신도 접종하지 않아야 함
[제6편] 검역	도착 후 2주 이내 격리 기간 동안 황열병 혈청 검사, 포유류와 조류의 튜베르쿨린 피부반응비교검사 및 기타 관련 검사를 실시 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함.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은 폐기 조치함	도착 후 2주 이내 격리 기간 동안 튜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MOT (Mammalian old tuberculin) 또는 포유류와 조류의 피부 반응 비교검사 이용) 및 기타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함.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은 폐기 조치함

표 2. 동물원 전시 용도의 영장류 및 조류 수입위생조건 신구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
[제4편] 검역증명서	〈신 설〉 내용 추가	– 황열병 발생국 경유시 Nparks/AVS의 사전승인 요청 – 운송 시 모기밀폐포장하여야 함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살아있는 동물 운송 규정에 준하는 컨테이너로 운송하여야 함
	(a) 동물원 내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은 수출 전 3개월 이상 모기가 밀폐된 곳에서 격리하여야 함 (b) 동물원 내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충족하는 동물은 수출 또는 재수출 전 1개월 이상 동물원에 격리하여야 함	(a) 출생 후 또는 수출 전 2년간 원산지에서 체류한 동물은 수출 전 30일 이상 격리하여야 함 (b) 동물원 내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은 수출 전 90일 이상 모기가 밀폐된 곳에서 격리하여야 함
[제6편] 검역	동물원 내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은 도착 시 동물원 내 승인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모기가 밀폐된 곳에서 격리하여야 함	(a) 동물원 내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은 도착 시 수입업자의 시설 내 승인된 장소에서 모기가 밀폐된 곳에서 90일 이상 격리하여야 함 (b) 출생 후 또는 수출 전 2년간 원산지에서 체류한 동물은 수입업자의 시설 내 승인된 승인된 장소에서 모기가 밀폐된 곳에서 30일 이상 격리하여야 함
	도착 후 2주 이내 격리 기간 동안 황열병 혈청 검사, 포유류와 조류의 튜베르쿨린 피부반응비교검사 및 기타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함.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은 폐사 조치함	도착 후 2주 이내 격리 기간 동안 튜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MOT (Mammalian old tuberculin) 또는 포유류와 조류의 피부반응비교검사 이용) 및 기타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함. 양성 판정을 받은 동물은 폐사 조치함

관련 사이트

http://sps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72517?FromAllNotifications=True
http://sps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72518?FromAllNotifications=True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SGP/21_3708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SGP/21_3709_00_e.pdf

02 [일본]

육류 및 설육의 수입허용국가와 시설 개정

(G/SPS/N/JPN/757/Add.1, '21.5.7.)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50-2조 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위생 제조 시설을 갖춘 국가 또는 시설에서 생산 및 가공된 육류와 설육만이 수입 허가됩니다.

표 1. 육류 및 설육의 수입허용국가와 시설 목록(신규로 추가된 품목 및 국가는 밑줄로 표시)

품목	수입허용국가와 시설
쇠고기 및 들소고기와 소 및 들소의 설육	그레이트브리튼 북부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몽골, 미국, 바누아투, 벨기에, 북부 아일랜드,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탈리아,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태국,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말고기 및 설육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부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몽골, 미국, 및 바누아투, 벨기에, 북부 아일랜드,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돼지고기 및 설육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부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바누아투,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태국,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염소 및/또는 양의 고기 및 설육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부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몽골, 미국, 바누아투,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이탈리아,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태국,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가금육 및 가금류의 설육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부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상기 표에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국가와 일본이 합의된 수출위생증명서가 없는 국가는 수입허용국가에서 제외됩니다. 동 조치는 '21.5.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3307_00_e.pdf

03 [태국]

동물 지육으로 분류되는 가공식품 목록 통보

(G/SPS/N/THA/392, '21.5.12.)

태국 농업협동부 축산개발국은 가축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가축전염병법 B.E. 2558에 근거하여 육류, 꿀 및 난류를 가공하여 만든 아래의 식품을 동물 지육(carcass)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소시지류(중국산 소시지, 발효된 돼지고기 소시지), 살라미, 햄, 베이컨, 훈제 육류, 절인 육류, 경화된 육류, 육가공 버거, 꿀, 벌집, 로얄 젤리, 소금에 절인 달걀 또는 노른자, 보존 가공된 달걀(preserved eggs) 등

원문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참고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1/E/162/4.PDF

01 [대만]

가지속 및 고추속 식물 종자의 수입규제조치 개정

(G/SPS/N/TPKM/561/Add.1, '21.5.12.)

대만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수입규제조치 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의 종자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바이러스(3종) 및 바이로이드(6종)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수출 직전에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가 미검출됨'이라는 문구가 부기(additional declaration)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자는 소각 처리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 처리될 것임

· 해당 바이러스(3종) 및 바이로이드(6종)

– 바이러스: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TYLCV), *Tomato mottle mosaic virus*(ToMMV), *Pepino mosaic virus*(PepMV)

– 바이로이드: *Columnea latent viroid*(CL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Tomato apical stunt viroid*(TASV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TCDVd), *Tomato planta macho viroid*(TPMVd), *Pepper chat fruit viroid*(PCFVd)

관련 사이트	http://docs.wto.org/imrd/directdoc.asp?DDFDocuments/t/G/SPS/NTPKM561A1.DOCX

02 [미국, 캐나다]

아시아매미나방(AGM) 규제지역에서 출항한 선박에 대한 특정위험기간 개정

(G/SPS/N/USA/3246, G/SPS/N/CAN/1388, '21.5.18. 외 1건)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아시아매미나방(Asian Gypsy Moth; AGM) 규제지역(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에 관한 지침문서 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침문서의 개정은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 AGM 전문가그룹의 과학기술분석에 근거하여 개정된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특정위험기간을 반영하였습니다.

북미식물보호기구의 AGM 전문가그룹은 모든 AGM 규제지역(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의 AGM 종 복합체*에 대한 특정위험기간을 검토하였습니다.

* 종 복합체(species complex): 외형이 유사하여 종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개체 집단

이용 가능한 자료의 평가와 AGM 규제 국가와의 협의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의 특정위험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특정위험기간은 현행(6.1일~9.30일)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 특정위험기간 지역 조정 및 일본 일부 지역에서 출항한 선박의 AGM 인증이 필요한 특정위험기간 개시 및 종료일 연장

2)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AGM 인증이 필요한 특정위험기간 개시 및 종료일 연장

이번 개정은 '22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APHIS와 CFIA은 특정위험기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AGM 규제지역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침문서'의 개정을 '21.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https://www.aphis.usda.gov/plant_health/plant_pest_info/gypsy_moth/downloads/revised-special-procedures-ships-arriving-areas-agm.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AN/21_3452_00_e.pdf

03 [호주]

포도피어슨병균의 기주 식물 추가 관련 긴급조치 통보

(G/SPS/N/GBR/7, '21.4.7.)

호주 농림수자원환경부는 농업에 주요 문제가 되는 *Xylella*속(genus) 병원체가 호주 내 보고된 적이 없으며,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조치를 통해 포도피어슨병균(*Xylella fastidiosa*) 및 *Xylella* 속에 포함된 종[1]의 기주 식물 목록에 7개 과(family)[2]가 추가되었습니다.

표 1. 포도피어슨병균 및 *Xylella*속 병원체 관련 기주 식물 105개 과(family) 목록(신규로 추가된 7개 과는 *로 표시)

Acanthaceae	Brassicaceae	Euphorbiaceae	Oleaceae	Rutaceae
Adoxaceae	Bromeliaceae	Fabaceae	Onagraceae	Salicaceae
Altingiaceae	Cannabaceae	Fagaceae	Orobanchaceae	Sapindaceae
Amaranthaceae	Cannaceae	Geraniaceae	Oxalidaceae	Scrophulariaceae
Amaryllidaceae	Caprifoliaceae	Gesneriaceae	Passifloraceae	Simmondsiaceae
Anacardiaceae	Caryophyllaceae	Ginkgoaceae	Paulowniaceae	Solanaceae
Annonaceae	Celastraceae	Haloragaceae*	Phytolaccaceae	Strelitziaceae
Apiaceae	Cistaceae	Hamamelidaceae	Pinaceae	Talinaceae
Apocynaceae	Clethraceae	Hydrangeaceae	Pittosporaceae	Tamaricaceae
Aquifoliaceae	Commelinaceae	Juglandaceae	Plantaginaceae	Theaceae
Araliaceae	Convolvulaceae	Lamiaceae	Platanaceae	Ulmaceae
Araucariaceae*	Cornaceae	Lauraceae	Poaceae	Urticaceae
Arecaceae	Corynocarpaceae*	Linaceae	Polemoniaceae	Verbenaceae
Argophyllaceae*	Cucurbitaceae	Lythraceae	Polygalaceae	Violaceae*
Asparagaceae	Cupressaceae	Magnoliaceae	Polygonaceae	Vitaceae
Asteraceae	Cyperaceae	Malpighiaceae	Portulacaceae	Xanthorrhoeaceae
Athyriaceae*	Dennstaedtiaceae*	Malvaceae	Proteaceae	Zygophyllaceae
Balsaminaceae	Ebenaceae	Meliaceae	Ranunculaceae	
Berberidaceae	Elaeagnaceae	Montiaceae	Resedaceae	
Betulaceae	Equisetaceae	Moraceae	Rhamnaceae	
Bignoniaceae	Ericaceae	Myrtaceae	Rosaceae	
Boraginaceae	Escalloniaceae	Nyctaginaceae	Rubiaceae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21.6.1일 또는 그 이후에 호주로 수출하는 탁송물(묘목, 조직배양체, 삽수, 눈접용 접가지, 구경 및 구근)에 적용되며, *Xylella*속 병원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수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Xylella*속 병원체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 및 식물 재료는 호주의 요건에 따라 역외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Xylella*속 병원체가 미검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참고) 고위험 국가(카리브해를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유럽 모든 국가, 인도, 이란, 레바논, 대만, 터키)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12개월간 승인된 격리재배 시설에서 검사되어야 하며, 묘목은 격리재배 선별검사에 따라 온탕침지를 하여야 함

1) *fastidiosa, multiplex, pause, sandi, tashke*, pear leaf scorch 포함
2) Araucariaceae, Argophyllaceae, Athyriaceae, Corynocarpaceae, Dennstaedtiaceae, Haloragaceae, Violaceae

관련 사이트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0/ViewElement/Element/Alert?elementPk=1486964

01 [브라질]

농약 7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G/SPS/N/BRA/1882/Add.1 외 6건, '21.5.11.)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은 농약 베타사이플루트린(Beta-cyfluthrin),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메트리뷰진(Metribuzin) 및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 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제정된 MRL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 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 없음

통보문	주요 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 BRA/1882/Add.1	Beta-cyfluthrin	■ 감귤 0.3ppm(국내 0.5ppm), 토마토 0.2ppm(국내 0.5ppm)	-	08/04/2021
G/SPS/N/ BRA/1889/Add.1	Flupyradifurone	■ 고추 0.6ppm(국내 1.5ppm), 토마토 0.5ppm (국내 2.0ppm) ■ 커피 1.5ppm, 멜론 1.0ppm, 오이 0.6ppm	토마토 종자	
G/SPS/N/ BRA/1891/Add.1	Propaquizafop	■ 대두 0.05ppm ■ 고구마 0.03ppm(국내 0.05ppm) ■ 밀, 보리 0.01ppm	-	
G/SPS/N/ BRA/1892/Add.1	Acetamiprid	■ 토마토 0.5ppm(국내 2.0ppm) ■ 쌀 0.3ppm ■ 고구마 0.5ppm(국내 0.1ppm)	-	
G/SPS/N/ BRA/1893/Add.1	Glyphosate	■ 강낭콩 0.05ppm(국내 3.0ppm), 보리 0.05ppm(국내 20ppm), 견과류 0.1ppm(국내 1.0ppm), 수수 1.0ppm(국내 30ppm)	-	
G/SPS/N/ BRA/1894/Add.1	Metribuzin	■ 고구마 0.1ppm(국내 0.5ppm), 밀 0.1ppm(국내 0.75ppm) ■ 토마토 0.1ppm(국내 0.05ppm), 대두 0.1ppm(국내 0.05ppm)	-	
G/SPS/N/ BRA/1899/Add.1	Flupyradifurone	■ 고추 0.6ppm(국내 1.5ppm), 토마토 0.5ppm(국내 2.0ppm) ■ 커피 1.5ppm, 멜론 1.0ppm, 오이 0.6ppm	토마토 종자	

관련 사이트

https://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data=12/04/2021&jornal=515&pagina=131
https://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data=12/04/2021&jornal=515&pagina=132
https://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data=12/04/2021&jornal=515&pagina=130

02 [유럽연합]

사료첨가제 L-발린(L-valine)의 사용승인 공고

(G/SPS/N/EU/488, '21.5.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은 모든 동물 종에 대한 사료첨가제로서 세균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Corynebacterium glutamicum*) CGMCC 7.358로 발효된 L-발린(L-valine)의 사용승인을 공고하였습니다.

사료첨가제	첨가제 범주	기능군(functional group)	사용승인 기간
L-발린(L-valine) *건물기준 98% 이상 함유된 분말, 수분 1.5% 이하	영양 보충용 첨가제	아미노산, 아미노산 염 및 유사체	'21.5.23일 ~ '31.5.23일

첨가제 범주 '영양 보충용 첨가제', 기능군 '아미노산, 아미노산 염 및 유사체'로 L-발린의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이하 'EFSA')은 동 물질이 사료에 적정량 첨가될 시 동물 위생이나 소비자 건강, 환경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는다고 '20.9.30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EFSA는 L-발린 흡입 시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피부 및 안구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피부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료 급여자 대상으로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적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반추동물 영양 보충용으로 섭취 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추동물의 위에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동 물질은 '21.5.23일부터 '31.5.23일까지 10년간 사용 승인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3289_00_e.pdf

03 [캐나다]

농약 4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정

(G/SPS/N/CAN/1371/Add.1 외 3건, '21.5.18.)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농산물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에테폰(Ethephon),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및 메토프렌(Methoprene)의 잔류허용기준(MRL) 제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제정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CAN/1371/Add.1	Flupyradifurone	■ 포상추 9.0ppm(국내 15ppm), 감자 0.01ppm(국내 0.05ppm), 근대 0.01ppm(국내 15ppm), 엽경채류 0.01ppm(국내 1.0ppm), 셀러리 0.01ppm(국내 9.0ppm), 아스파라거스 0.01ppm(국내 2.0ppm)	감자 (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등	-	10/05/2021
G/SPS/N/JPN/837	Ethephon	■ 사과 0.1ppm(국내 5.0ppm), 레몬 0.1ppm(국내 2.0ppm) ■ 커피 1.5ppm, 멜론 1.0ppm, 오이 0.6ppm	사과(건조) 등		23/09/2023
G/SPS/N/CAN/1374/Add.1	Propiconazole	■ 밀 0.01ppm(국내 0.05ppm)	밀가루 등		21/05/2021
G/SPS/N/CAN/1393	Methoprene	■ 우유 0.01ppm(국내 0.05ppm)	-	01/08/2021	추후결정

관련 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html

01 [몽골]

육류 및 육류 제품 생산과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 제정안

(G/TBT/N/MNG/13, '21.5.27.)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생산과 거래에 관한 기술규정 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의 제정 목적은 환경 보호 및 공익뿐 아니라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과 거래 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범위 〉

- 식용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 운송, 보관 및 국내외 판매는 물론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 및 가공에 관여하는 개인, 법인, 관할 당국 및 관계자
- 자유무역지역 내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 식용 소, 말, 양, 염소, 사육용 돼지 및 가금류의 생산 및 판매
- 해외에서 몽골로 수입되는 육류 및 육류 제품이 일반 수의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증하는 경우
-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이 도축 및 가공한 동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수입위생조건 〉

1. 몽골 내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zoonotic disease) 및 국제 교역으로 금지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 설명하는 요건뿐 아니라 해외 수의검역당국과 몽골 검역당국이 합의한 SPS 협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몽골로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관은 CODEX의 "육류 위생 관행 – CAC/RCP 58-2005", 국제표준화기구(ISO),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할랄 표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4. 관할 당국은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소해면상뇌증(BSE)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5. 관할 당국은 돼지고기 및 가금육 수입에 관하여 고독성(high-toxic) 인플루엔자의 위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6. Covid-19 발생 또는 그와 유사한 팬더믹(pandemic)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OIE 및 WHO의 지침 및 권고에 따라 육류 및 육류 제품의 수입이 가능함

동 조치에 관한 의견수렴 마감일은 '21.7.30일까지이며, '22.4.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MNG/21_3676_00_e.pdf

02 [미국]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개정안

(G/SPS/N/USA/990/Add.2, '21.5.17.)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 농업마케팅지원청(AMS)은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개정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유기농으로 표시 및 판매되는 유제품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현행	개정안
205.2	〈신 설〉 용어 정의 추가	낙농 농장, 유기적 관리, 3년차 전환기(Transitional) 작물, 전환기 작물, 전환기 동물
205.236(a)(2)	유기농으로 표시, 판매되는 우유 또는 유제품은 최소 생산 1년 전부터 유기농으로 사육된 착유동물로부터 생산해야 함	– 항목 205.2에 정의된 생산자는 착유동물을 유기 생산으로 한 번만 전환할 수 있음 – 생산자는 새로운 착유동물 사육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비유기농 농장을 유기농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전환의 자격이 부여됨 – 이 전환이 완료된 후 생산자는 어떠한 새로운 동물도 유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없음 – 이러한 전환은 유기농으로 표시, 판매되는 우유 또는 유제품이 생산되기 전 12개월 동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205.236(a)(2)(i)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착유동물은 유제품 판매 전 12개월 동안 3년차 전환기 작물을 섭식할 수 있음	착유동물은 12개월 동안 유기농으로 사육되어야 함
205.236(a)(2)(ii)	농장 전체가 유기농장으로 전환될 때 이 하위 단락에 따라 생산된 우유가 '07.6.9일 이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유통되지 않을 경우 생산자는 (a) 처음 9개월 동안 사료의 최소 80퍼센트를 유기농지에서 재배된 작물로 제공하고, (b) 최종 3개월 동안 205.357을 준수하여 사료를 공급함	생산자는 12개월 동안 유기농 사육 계획의 일부로 전환을 설명하고 이를 205.401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205.236(a)(2)(iii)	농장 전체가 유기농장으로 전환되면, 모든 착유동물은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유기농으로 사육되어야 함	12개월 동안 착유동물 및 그 새끼는 3년차 전환기 작물을 섭식할 수 있음
205.236(a)(2)(iv)	〈신 설〉 내용 추가	전환기간 동안 3년차 전환기 작물을 섭취하거나 모체가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환기 작물을 섭식하는 경우 12개월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새끼는 유기농 유제품 생산 착유동물로 전환됨
205.236(a)(2)(v)	〈신 설〉 내용 추가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증된 유기농 작물 및 사료만 섭식한 모체에서 태어나고, 유기농으로 사육된 착유동물 새끼만 유기농으로 간주함
205.236(a)(2)(vi)	〈신 설〉 내용 추가	모든 착유동물은 동시에 유기 전환이 완료되어야 함
205.236(a)(2)(vii)	〈신 설〉 내용 추가	유기 전환이 완료된 착유동물은 전환 가축이며, 유축 이외의 유기농 축산물로 이용될 수 없음
205.236(a)(2)(viii)	〈신 설〉 내용 추가	12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 유기 전환된 가축이 인증 받은 유기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사육되면 유기농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205.236(a)(2)(ix)	〈신 설〉 내용 추가	12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 유기농 유제품 생산을 위해 농장에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부터 유기농으로 사육되거나 유기 인증 받은 농장의 전환 가축이어야 함

항목	현행	개정안
205.236(a)(3)	육종용 가축은 언제든지 비유기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 가능함. 단, 이 가축의 새끼를 유기농 가축으로 키우려면 적어도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유기농 농장에 반입해야 함	육종용 가축은 언제든지 비유기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 가능함.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205.236(a)(3)(i)	〈신 설〉 내용 추가	이러한 종축의 새끼를 유기 가축으로 키우려면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유기농장에 반입해야 함
205.236(a)(3)(ii)	〈신 설〉 내용 추가	종축은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에 해당하는 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 유기농으로 사육되어야 함
205.236(b)(1)	유기농에서 비유기농으로 전환된 가축 또는 식용 축산물은 유기농으로 표시 및 판매될 수 없음	유기농에서 비유기농으로 전환된 가축, 식용 축산물 또는 비식용 축산물(동물섬유 등)은 유기농으로 표시 및 판매될 수 없음
205.236(b)(2)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기간 이후 유기농으로 사육되지 않은 종축 또는 착유동물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표시될 수 없음	전체 임신기간 중 출산 전 1/3기간 이후 유기농으로 사육되지 않은 종축, 착유동물 또는 유기전환동물은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표시될 수 없음
205.236(c)	유기축산물 생산자는 유기농 가축과 그 식용 및 비식용 축산물의 식별을 보존기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유기축산물 생산자는 유기전환동물 여부를 포함하여 유기농 가축과 그 식용 및 비식용 축산물의 식별을 보존기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함

동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21.7.12일까지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http://www.gpo.gov/fdsys/pkg/FR-2015-04-28/html/2015-09851.htm

'21.5월 WTO SPS 통보 통계

'21. 5월말 기준, WTO SPS 통보 총 170건을 국가, 주요 내용, 해당 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검역(33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헝가리 일부 지역(Hajdú-Bihar)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5월6일)	헝가리 바치키슈쿤(Bács-Kiskun), 촌그라드(Csongrád)주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RUS/188/Add.2
2	러시아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베트남산 쇠고기의 잠정수입금지(4월 26일)	베트남	동축산물	동물위생;	G/SPS/N/RUS/226
3	브라질	양 및 염소 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양 및 염소)	식물보호; 동물위생;	G/SPS/N/BRA/1946
4	브라질	쇠고기 및 소 내장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물보호; 동물위생;	G/SPS/N/BRA/1947
5	싱가포르	전시용 동물 및 조류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 황열병(Yeollow Fever) 비청정국산 제품의 수입 요건, 수입운송 규정 등에 관함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동물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SGP/70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6	싱가포르	전시용 동물 및 조류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 황열병(Yeollow Fever) 비청정국산 제품의 수입 요건, 수입운송 규정 등에 관함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동물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SGP/71
7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슬로바키아 일부 지역(Bratislava)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5월4일)	슬로바키아 토르나바(Trnava)주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ARE/231/Add.1
8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불가리아 일부 지역((Haskovo)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5월4일)	불가리아 플레벤(Pleven)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ARE/234/Add.1
9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볼리비아 Plovdiv시(市) 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5월 18일)	불가리아 플레벤(Pleven)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ARE/234/Add.2
10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리투아니아 일부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리투아니아 카우나스(Kaunas)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ARE/227/Add.1
11	유럽연합	모든 동물종에 대한 사료첨가제인 L-발린(L-valine)의 사용승인 공고	모든 교역국	사료첨가제	식품안전;	G/SPS/N/EU/488
12	유럽연합	사료첨가제의 시판승인 철회 공고 – 자일리톨, 암모늄락테이트, 아세트산암모늄 함유 제품	모든 교역국	사료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EU/455/Add.1
13	칠레	반추동물 케이싱의 수입위생조건 발효 – 소 및 염소 내장	모든 교역국	축산물(내장)	동물위생;	G/SPS/N/CHL/640/Add.1
14	칠레	특정 동물의 가죽 및 박제동물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 멧돼지과 및 소과 등	모든 교역국	동축산물	동물위생;	G/SPS/N/CHL/674
15	칠레	칠레산 냉동 소 정자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 소 정자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산 농장일 것	모든 교역국	축산물(소 정자)	동물위생;	G/SPS/N/CHL/676
16	칠레	반추동물(양 및 염소)의 수입위생조건 발효(5월 26일)	모든 교역국	축산물	동물위생;	G/SPS/N/CHL/645/Add.1
17	캐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산 사료의 수입요건 시행	체코	사료	동물위생;	G/SPS/N/CAN/1244/Add.12
18	쿠웨이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발생에 따른 말리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열처리 제품 제외)	말리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KWT/98
19	쿠웨이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발생에 따른 헝가리 일부 지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열처리 제품 제외)	헝가리 나두드버르(Nádudvar) 시(市)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KWT/99
20	쿠웨이트	리프트벨리열 발생에 따른 마다가스카라산 모든 반추동물 육류의 수입금지 조치(5월 23일)	마다가스카르	동축산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KWT/100
21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인도네시아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3
22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베트남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베트남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4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3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덴마크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덴마크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5
24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프랑스 일부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프랑스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6
25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영국 일부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영국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7
26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독일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독일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8
27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네덜란드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99
28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남아공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남아공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400
29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라오스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라오스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401
30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프랑스 일부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90일간)	프랑스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402
31	태국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미얀마산 쇠고기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4월 28일)	미얀마	돈육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403
32	페루	벨기에산 냉동 소 정자의 수입위생조건 승인(5월 14일)	벨기에	축산물 (소 정자)	동물위생;	G/SPS/N/PER/926
33	호주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양식 개정공고 - 개, 고양이 수입시 적용	모든 교역국	동물 (개, 고양이)	동물위생;	G/SPS/N/AUS/521

식물검역 (33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물검역증명서 신규서식(A4) 도입 공고 - QR코드, 바코드 등 포함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ZAF/69/Add.2
2	니카라과	니카라과 규제병해충 목록의 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NIC/107/Add.1
3	대만	토마토바이러스(ToBRFV) 관련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검역요건 발효(5월 6일)	미국, 중국, 유럽 등 다수 국가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TPKM/560/Add.1
4	대만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수입을 위한 긴급검역조치 개정 - 무감염 증명 병해충 목록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TPKM/561/Add.1
5	대만	기내로 반입되는 동/식물 수화물의 검역규정 개정(안) 효력발생 공고 - 규정과 부합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됨	모든 교역국	동식물 검역 대상 제품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TPKM/559/Add.1
6	멕시코	통보문 내 오류 수정 - 관련국가 정정(모든 교역국 → 칠레)	모든 교역국	식물(작약)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MEX/393/Corr.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7	멕시코	벨기에산 치커리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칠레	식물(치커리)	식품안전;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MEX/394
8	미국	아시아매미나방(AGM) 규제지역산 선박의 검역지침 개정안 – 러시아 및 일본 선박에 적용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USA/3246
9	미국	신선 아보카도 과실의 수입을 위한 의견수렴공고(5월 17일까지)	에콰도르	식물(아보카도)	식물보호;	G/SPS/N/USA/3008/Add.1
10	미국	일본산 신선 멜론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공고(7월 20일까지)	일본	식물(멜론)	식물보호;	G/SPS/N/USA/3248
11	미국	병해충 파나마병(Foc TR4)의 유입방지를 위한 바나나 및 플랜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호주, 중국, 콜롬비아, 인도, 태국 등 다수 국가	식물(바나나)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USA/3249
12	브라질	벼(Oryza sativa)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벼)	식물보호;	G/SPS/N/BRA/1945
13	브라질	브라질 일부 지역 내 병해충(Anastrepha grandis) 청정지역 회복 공고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BRA/1948
14	아르메니아	버섯 종균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 질병무발생증명요건 추가(*Phymatotrichopsis omnivora*(Texas root rot),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 ticum*), 집벼룩파리(*Megaselia scalaris*)	모든 교역국	식물 (버섯종균)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ARM/32
15	아르메니아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활용에 관한 절차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ARM/33
16	에콰도르	파종용 벼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미국	식물(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ECU/255
17	에콰도르	파종용 보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멕시코	식물(보리)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ECU/256
18	에콰도르	재식용 조직배양(*in vitro*) 블루베리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미국	식물(블루베리)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ECU/257
19	에콰도르	콜롬비아산 재식용 체외배양 제비꽃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콜롬비아	식물(제비꽃)	식물보호;	G/SPS/N/ECU/258
20	칠레	페루 일부 지역산 감귤류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잠정 조치 시행(생산지 검역 면제 조치)	페루	식물(감귤류)	식물보호;	G/SPS/N/CHL/675
21	칠레	관상용 식물 살비아(*Salvia* spp.)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모든 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G/SPS/N/CHL/673
22	칠레	멕시코산 신선 망고의 수입을 위한 영상검역 시행	멕시코	식물(망고)	식물보호;	G/SPS/N/CHL/677
23	칠레	관상용, 전시용 및 판매용 조직배양 식물재료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CHL/678
24	캐나다	아시아매미나방(AGM) 규제지역산 선박의 검역지침 개정안 – 러시아 및 일본선박에 적용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CAN/1388
25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산 신선 아보카도 과실에 대한 병해충(ASBVD) 완화를 위한 잠정조치 제정	온두라스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 보호;	G/SPS/N/CRI/238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6	페루	아르헨티나산 감귤류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아르헨티나	식물(감귤류)	식물보호;	G/SPS/N/PER/909/Add.1
27	페루	콜롬비아산 신선 용과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콜롬비아	식물(용과)	식물보호;	G/SPS/N/PER/927
28	페루	칠레산 접목용 복숭아 대목 및 식물에 관한 수입검역 요건 제정	칠레	식물(복숭아)	식물보호;	G/SPS/N/PER/886/Add.1
29	페루	칠레산 피스타치오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칠레	식물(피스타치오)	식물보호;	G/SPS/N/PER/598/Add.1
30	페루	칠레산 피스타치오 식물(절지)의 수입검역요건 의견수렴 공고	칠레	식물(피스타치오)	식물보호;	G/SPS/N/PER/727/Add.1
31	호주	병해충 포도피어슨병균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 기주식물 추가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AUS/376/Add.3
32	호주	재식용 묘목의 수입을 위한 규제병해충(*Phytopthora ramorum*) 대상국 목록 개정 - 대상국에 아르헨티나 및 일본 추가	아르헨티나, 일본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AUS/523
33	호주	병해충 곡식수시렁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공고 - 1~6단계별 검역조치 시행일정 공고	모든 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AUS/502/Add.10

식품안전 (104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대만	계수나무 과실의 식품사용 제한 조치	모든 교역국	식물(계수나무)	식품안전;	G/SPS/N/TPKM/541/Add.1
2	대만	식품 위생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조치 연장('21년까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TPKM/530/Add.4
3	대한민국	수입식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 수입 김치 물량별(1천톤~1만톤) 적용일 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KOR/702/Add.1
4	대한민국	수입식품 검사규정 개정안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KOR/717
5	대한민국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실시 요령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KOR/718
6	대한민국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에 관한 고시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KOR/719
7	대한민국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및 규격 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KOR/720
8	미국	요거트 내 함유되는 비타민 D3의 허용량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USA/3245
9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트리플루목사진(Trifludimoxazin),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배(신선), 아몬드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USA/3247
10	베트남	동물사료(수생동물 포함) 내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제정 - 비소, 카드뮴, 납, 아플라톡신 등	모든 교역국	사료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VNM/113/Add.2
11	베트남	동물사료(수생동물 포함) 내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제정 - 비소, 카드뮴, 납, 아플라톡신 등	모든 교역국	사료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VNM/113/Add.3
12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보다 강화(고추, 토마토) * 한국 수출품목 : 토마토 종자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BRA/1899/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3	브라질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정 - 플루라라너(Fluralaner), 국내기준 없음(축산물)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BRA/1527/ Add.4
14	브라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곡물 분말 및 곡물 제품(함유량 30% 이상)	모든 교역국	식품(곡물)	식품안전;	G/SPS/N/ BRA/1660/ Add.1
15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맨디프로파미트(Mandipropamid), 국내보다 강화(배추, 양배추) * 한국 수출품목 : 양배추 종자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31/ Add.1
16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루아조지포(Fluazifop), 국내미사용 농약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0/ Add.1
17	브라질	농약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의 휴약기간 변경 - (현행) 30일 → (개정) 7일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1/ Add.1
18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베타사이플루트린(Beta-cyfluthrin) 유제, 국내보다 강화(감귤, 토마토)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2/ Add.1
19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국내기준 없음(두류)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3/ Add.1
20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국내기준 없음(양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4/ Add.1
21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시목시아닐(Cymoxanil), 국내기준 없음(콩)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5/ Add.1
22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제타사이퍼메트린(Zeta-cypermethrin), 국내기준 없음(고구마, 무 등)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8/ Add.1
23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기준 없음(고추, 토마토) * 한국 수출품목 : 토마토 종자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9/ Add.1
24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0/ Add.1
25	브라질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ADI) 결정 -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0.15ppm)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1/ Add.1
26	브라질	농약의 급성독성참조량(ARfD) 결정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025ppm)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2/ Add.1
27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국내보다 강화(견과류, 보리)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3/ Add.1
28	브라질	활성성분 메트리부짐(Metribuzim)의 비농업적 활용 허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4/ Add.1
29	브라질	활성성분 S-Metolacloro의 비농업적 활용 허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5/ Add.1
30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스피네토람(Espinetoram), 국내기준 없음(사탕수수)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6/ Add.1
31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국내기준 없음(사탕수수)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7/ 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32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델타메트린(Deltamethrin), 국내보다 강화(옥수수, 밀)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8/ Add.1
33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퀴잘로포프-P(Quizalofop-P), 국내기준 없음(곡물류) *한국 수출품목 : 감자(기타), 밀가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944
34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900/ Add.1
35	브라질	미생물에서 추출한 하핀(Harpin) 단백질의 농약 사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943
36	브라질	수입 축산물 허용목록에 관한 통보문(G/SPS/N/BRA/1184/Add.2) 내 첨부파일 추가	모든 교역국	식품(축산물)	식품안전;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BRA/1184/ Add.2/Corr.2
37	브라질	이전에 통보된 통보문 내 첨부문서 변경 - 해외수출작업장에 적용되는 수입허용품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BRA/1184/ Add.2/Corr.3
38	사우디 아라비아	꿀 및 양봉제품의 수입요건 의견수렴일 연장 공고 (7월 28일까지)	모든 교역국	식품(양봉제품)	식품안전;	G/SPS/N/ SAU/452/ Add.1
39	사우디 아라비아	식품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 제정 - 냉동 닭고기(3개월)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SAU/435/ Add.1
40	사우디 아라비아	식품의 최대보관기간의 표시 규정 개정 - (기존)신선란 90일 → (변경)60일	모든 교역국	식품(신선란)	식품안전;	G/SPS/N/ SAU/435/ Add.2
41	싱가포르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s)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 SGP/69
42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건조 과실 및 채소(수분함량 5% 미만 제외)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GA/157
43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수프 및 브로스(broth), 곰팡이 불검출요건 기재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GA/158
44	우크라이나	전시 및 연구용으로 수입된 제품의 관리 절차 규정 발효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G/SPS/N/ UKR/142/ Add.1
45	우크라이나	원산국/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식품 목록 발효공고 - 축산물(소, 돼지, 닭 등), 올리브유 및 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KR/145/ Add.2
46	우크라이나	농약의 사용 및 생산 규정강화 법률(안) 공고 - 농약 표시요건, 등록절차 및 허위농약 규제강화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KR/161
47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철회 - 클로르데콘(Chlordecone)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EU/398/ Add.1/Corr.1
48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아세퀴노실(Acequinocyl), 사이클록시딤(Cycloxydim)외 다수, 국내보다 강화 (감자, 토마토, 쌀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EU/397/ Rev.1
49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클로르데콘(Chlordecone), 국내보다 강화(축산물, 가금육)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EU/398/ Rev.1
50	유럽연합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채택 - 클로르데콘(Chlordecone), 국내기준 없음(축산물)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EU/398/ Rev.1/Add.1
51	유럽연합	와인 양조법 개정 - 감미료 사용법, 허용물질 한도 및 승인철회(주석산) 등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품(와인)	식품안전;	G/SPS/N/ EU/489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52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디클로포프(Diclofop), 플루오피람(Fluopyram) 등, 국내 보다 강화(대두, 곡물류 등) * 한국 수출품목: 대두 기타, 밀가루, 과실견과 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EU/397/Rev.1/Add.1
53	유럽연합	사용허가 향미료 목록 추가 - 3-(1-((3,5-dimethylisoxazol-4-yl)methyl)-1H-pyrazol-4-yl)-1-(3-hydroxybenzyl) imidazolidine-2,4-dione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EU/490
54	유럽연합	식품보충제인 홍국(Red yeast rice)의 모나콜린(Monacolins) 사용 승인	모든 교역국	식품첨가물	식품안전;	G/SPS/N/EU/491
55	일본	HACCP 인증 수출작업장 국가목록 개정 - 한국 추가(말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작업장)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JPN/757/Add.1
56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칼탑(Cartap), 티오싸이크람(Thiocyclam) 및 벤설탑(Bensultap), 국내보다 강화(청경채) * 한국 수출품목 : 단고추, 토마토(신선)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790/Add.1
57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펜퀴노트리온(Fenquinotrione), 국내 미등록 제품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JPN/842
58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플라자설퓨론(Flazasulfuron),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신선)토마토, 단고추(벨타입)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43
5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톨펜피라드(Tolfenpyrad), 국내기준 동일(차) * 한국 수출품목: 홍차 및 부분발효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44
60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국내 미등록 제품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JPN/845
61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데코퀴네이트(Decoquinate),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JPN/846
62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데코퀴네이트(Decoquinate), 국내 미등록 제품 * 한국 수출품목: 연어(냉동)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47
63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이소메타미디움(Isometamidium),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48
64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메실리남(Mecillinam),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49
65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멘부톤(Menbutone),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50
66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나프실린(Nafcillin),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51
67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니트로시닐(Nitroxinil),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닭고기(밀폐용기)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52
68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버지니아마이신(Virginiamycin),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853
6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펜헥사미드(Fenhexamid), 국내기준 동일(키위) * 한국 수출품목: 오이류(신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791/Add.1
70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로메토퀸(Flometoquin),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792/Add.1
71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채택 - 옥사조술필(Oxazosulfyl),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JPN/793/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72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프로하이드로자스몬(Prohydrojasmon), 국내기준 없음(토마토, 온주 귤) *한국 수출품목 : 토마토(신선)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794/ Add.1
73	일본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채택 - 틸디피로신(Tildipirosin) 국내기준 없음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795/ Add.1
74	칠레	동물성 성분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수입위생요건 시행(열처리를 거친 축산물 가공제품에 해당)	모든 교역국	동물성 식품	동물위생;	G/SPS/N/ CHL/659/ Add.1
75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사전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특정 유제품 내의 Chymosin 사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85
76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사전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제3인산 나트륨	모든 교역국	식품(새우)	식품안전;	G/SPS/N/ CAN/1386
77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국내기준 완화(비트, 고구마, 당근) * 한국 수출품목: 냉동채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0/ Add.1
78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국내보다 완화(귀리, 두류, 곡물류) * 한국 수출품목: 귀리(기타), 과실견과(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87
79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보다 강화(감자, 엽채류) * 한국 수출품목: 감자(기타/처리)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1/ Add.1
80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에테폰(Ethephon), 국내보다 강화(사과, 레몬) * 한국 수출품목: (건조)사과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53/ Add.1
81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국내보다 강화(사과, 양배추, 양상추) * 한국 수출품목: 양배추(신선), 사과주스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5/ Add.1
82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국내보다 강화(밀) * 한국 수출품목: 밀가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4/ Add.1
83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람다 사이할로트린(Lambda-cyhalothrin), 국내기준 없음 * 한국 수출품목: 마늘, 포도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89
84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펜디메탈린(Pendimethalin), 국내기준 동일(샐러리)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90
85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메탈락실(Metalaxyl), 국내기준 없음(베리류) * 한국 수출품목: 과실견과(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91
86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메탈락실(Metalaxyl), 국내보다 완화(베리류) * 한국 수출품목: 과실견과(기타)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92
87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국내기준 동일(망고)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6/ Add.1
88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메토프렌(Methoprene), 국내보다 강화(우유)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93
89	콜롬비아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아바멕틴(Abamectin), 국내보다 강화(양파, 옥수수) *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 COL/327
90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감자(Livingstone potato)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28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91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쇠고기 다짐육(버거, 케밥, 미트볼용), 지방함량 및 미생물 기준 등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29
92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닭고기 향미료(essence), 단백질함량 및 미생물 기준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30
93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닭고기 다짐육(버거, 케밥, 미트볼용), 지방함량 및 미생물 기준 등에 관함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31
94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설육(소, 양, 버팔로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32
95	탄자니아	신선편의용 과일 및 채소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35
96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육류 추출물(쇠고기)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33
97	탄자니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용곤충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ZA/134
98	태국	마리화나 및 대마 등 마약류 식물에 관한 수입요건 제정	모든 교역국	식물 (마약류 식물)	식품안전;	G/SPS/N/ THA/390
99	태국	영유아용 식품 내 오염물질 목록 추가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HC), Cannabidiol(CBD)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HA/391
100	태국	지육으로 구분되는 가공축산물 분류 공고 (소시지류, 햄류, 가공란 등)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THA/392
101	터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효력발생일 공고 - 양봉제품(프로폴리스, 로열제리, 벌화분 등)	모든 교역국	식품(양봉제품)	식품안전	G/SPS/N/ TUR/117/ Corr.1
102	페루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디포콜(Difocol)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PER/925
103	페루	수산물 제품 및 수생동물 사료의 수입위생조건 의견수렴 공고	모든 교역국	식품 (수산물)	동물위생;	G/SPS/N/ PER/928
104	호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이안트라닐리프롤(Cyantraniliprole),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플룩사피록사드 (Fluxapyroxad) 등 국내기준 없음(귀리, 보리) * 한국 수출품목: 귀리(기타), 보리(볶은 것)	모든 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AUS/522

* 통보문 원문 및 번역본 관련 상세내용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1. 5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동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대만	모든 교역국	여객 및 승무원을 통해 운반되는 동식물의 검역규정 개정	09/04/2021
러시아	베트남	살아있는 쇠고기의 잠정수입금지	26/04/2021
	헝가리 하두 비하르 (Hajdú-Bihar)주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05/06/2021
브라질	모든 교역국	양 및 염소 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06/05/2021
		쇠고기 및 소 내장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06/05/2021
싱가포르	모든 교역국	동물원 동물(영장류) 및 조류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01/07/2021
		실험용 동물(영장류)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01/07/2021
아랍에미리트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Kaunas)시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6/05/2021
	불가리아 플레벤 (Pleven) 하스코보 (Haskovo)시		04/05/2021
	불가리아 플레벤 (Pleven) 플로브디프 (Plovdiv)시		18/05/2021
	슬로바키아 토르나바 (Trnava) 주		04/05/2021
칠레	모든 교역국	특정 동물의 가죽 및 박제동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추후결정
		냉동 소 정자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04/05/2021
		소형 반추동물(양 및 염소)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26/05/2021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캐나다	체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산 사료의 수입조건 시행	07/05/2021
쿠웨이트	마다가스카르	모든 반추동물 육류의 수입금지	23/05/2021
	말리	모든 종류의 가금류(섭씨 70도에서 열처리한 제품 제외)의 잠정수입금지	15/05/2021
	헝가리 나두드버르 (Nádudvar)시		15/05/2021
태국	남아공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2/04/2021
	네덜란드		22/04/2021
	덴마크		22/04/2021
	독일		22/04/2021
	베트남		22/04/2021
	영국		22/04/2021
	인도네시아		22/04/2021
	프랑스 Lucciana 지역		22/04/2021
	프랑스 로에가론 (Lot-et-Garonne), 제르(Gers), 지론드(Gironde)주		28/04/2021
	라오스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2/04/2021
	미얀마	소, 물소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9/04/2021
페루	벨기에	냉동 소 정자의 수입위생조건 제정	14/05/2021

식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니카라과	모든 교역국	규제병해충 목록의 개정	20/11/2020
대만	모든 교역국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수입을 위한 긴급검역 조치 개정	추후결정
대한민국	모든 교역국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에 관한 고시 개정	추후결정
미국	모든 교역국	아시아매미나방(AGM) 규제지역산 선박의 검역지침 개정	01/01/2022
	대만	파나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바나나 및 플랜틴의 수입금지	21/05/2021
	라오스		
	레바논		
	마요트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미얀마		
	베트남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콜롬비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호주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브라질	모든 교역국	벼(*Oryza sativa*) 종자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04/05/2021
칠레	모든 교역국	관상용 식물 살비아(*Salvia* spp.)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05/05/2021
		조직배양체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페루	감귤류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잠정 조치 시행	18/05/2021
캐나다	모든 교역국	아시아매미나방(AGM) 규제지역산 선박의 검역지침 개정	추후결정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신선 아보카도 과실의 잠정 조치 제정	추후결정
페루	아르헨티나	감귤류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칠레	접목용 복숭아 대목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칠레	피스타치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칠레	피스타치오 절지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호주	모든 교역국	포도피어슨병균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시행	01/06/2021
		곡식수시렁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시행	추후결정
	아르헨티나	재식용 묘목의 수입을 위한 규제병해충(*Phytopthora ramorum*) 대상국가 목록 개정	25/05/2021
	일본		